

# 예산총칙

2018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70,164,000	23,104,920
일반회계	649,278,000	19,478,340
특별회계	120,886,000	3,626,580
공기업특별회계	82,673,000	2,480,190
상수도사업	24,843,000	745,290
하수도사업	35,830,000	1,074,900
대전해수욕장개발사업	22,000,000	660,000
기타특별회계	38,213,000	1,146,390
주택사업	455,000	13,650
의료보호기금사업	2,037,000	61,11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271,000	38,13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8,043,000	541,29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용자기금	3,000,000	90,000
주차장설치사업	1,090,000	32,700
바다진흙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2,500,000	75,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02,000	3,060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1,189,000	35,670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943,000	28,290
학교급식지원센터	7,583,000	227,49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6,193,707천원,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2,000,000천원 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경비는 이용할 수 있다.

- ①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 ② 지방채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